

제299회 임시회
2011. 4. 21.(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4. 21.(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4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4월 13일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운영현)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20세 이상 ⇒ 19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청구인 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마련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주소에서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금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2009년 2월 12일)의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9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 청 북 도 지 사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인	서명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00px;">충청북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9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u>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u>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신 설></p> <p>② (생 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지사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